### 강의료 지급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강의의 구분) 본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.
- 2. 국내외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.
- 3. 전임교원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.
- 4.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.

제3조(강의 책임시간) ①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수는 대학(학부)과 각 대학원의 담당 시간을 통산하여 <u>12시간</u>으로 하며, 초과강의 시간계산은 <u>별표</u>의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한다.(2018.8.24.개정, 별표 2018.9.1. 개정, 별표 20201.11 개정)

- ② 보직을 가진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별표와 같이 한다. 다만,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상위보직의 책임시간으로 한다.
- ③ 부속 및 부설기관 담당시간은 제외한다.

제4조(책임시간미달) ① 전임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수에 미달될 때에는 학부 (과)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미달 시수는 다음 학기의 책임시수에 합산하다.

- ② 책임시수가 1학기에 초과되고 2학기에 미달된 경우에는 2학기에 부족한 시수 만큼 1학기에 지급된 초과강의료를 환입하여야 하며, 책임시수가 1학기에 미달되고 2학기에 초과된 경우에는 1학기에 부족한 시수만큼의 초과강의료를 2학기에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③ 강의 담당시간이 연간 총 책임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학년도에 이를 보충하여 야 하며 미달된 책임시간을 그 다음 학년도까지 보충하지 못한 교원은 이를 보충할 때까지 승급을 제한하고, 교내연구비 지원을 중단한다.
- ④ 당해 학기의 책임시간 초과분을 다음 학기의 부족시간으로 충당할 수 없다.

제5조(강의료 지급 기준) 강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(개정 2018.3.1.)

1. 강의시간 단위는 보통강의는 50분 수업을 1시간으로 한다.

### (단, 토요수업은 원칙적으로 45분을 1시간 수업으로 한다.)

- 2. 초과강의료는 실제 강의시간 수가 책임 시간 수를 초과한 교원에게 지급한다.
- 3.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.
- 4. 본교 행사(체육대회, M.T, 실습 등) 본교 사정 및 출장으로 휴강하였을 경우 강의료는 지급하되 반드시 보강을 필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한계시간)** ① 본 대학교 교원의 주당 한계시간은 별표와 같다. 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계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타 대학교 출강) ① 본교 전임교원이 타 대학(교)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학기 시작 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② 타 대학 출강 시 본교 한계시간을 충족하여야 하고 타 대학은 최대 2강좌만 허용 한다.
- ③ 책임시간의 일부감면을 받은 보직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대학(교)에 출강할 수 없다.

제8조(강의료 지급 기준액) 시간당 강의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.

제9조(특강료) 초빙강사(국내·외) 특강료 및 외국인 시간강사의 강의료 지급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초빙강사(국내.외) 특강료 및 외국인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증액 지불할 수 있다.
- 2. 외국인 강사의 강의료는 고용계약서에 따른다.

제10조(강의료 지급의 특례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의료 지급을 별도로 한다.

1. 수강인원이 80명 이상일 경우, 강의료 정액의 20퍼센트를 추가 지급한다.(개정.2018.3.1.) (단, 실습 및 토요수업 과목은 제외한다.)

제11조(강의료 지급 기준일) 강의료 지급일은 4주 단위가 지난 첫 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교원 주당 책임시간의 감면시간 및 한계시간(2020.11.1. 개정)

구분	직 위	책임시간
1	부총장	9
2	처장, 대학원장, 신대원장	9
3	학과장	11
4	부설연구소장 및 부속기관장	12
5	전임교원(정년트랙)	12
6	전임교원(비정년트랙)	5
7	비전임교원	_

<sup>\*</sup>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 시간계산은 5시간을 원칙으로 하되, 일정기간 전담영역이나 임무, 직책, 별도의 대내외 활동이 있는 경우 7시간으로 할 수 있다.